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 1 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제 2 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제 3 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법규개정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1. 설치근거 및 기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2002년 6월 13일) 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운영되었다.

2. 구 성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천년 민주당, 한나라당에 각 1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한국언론학회는 박기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민기 변호사, 한국신문협회는 임춘웅 전 서울신문 이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동익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 새천년민주당은 이경일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한나라당은 이동화 경기대 대우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에 대해 당적 보유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들 6명과 함께 양삼승 변호사, 김해도 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권동순 전 일요서울 편집국장 등 모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차 선거기사심의회의의 겸 발족식을 갖고 호선에 의해 양삼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기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3. 기 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첫째,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심의·의결을 하여 불공정한 기사의 재발방지를 도모한다.

둘째,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셋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 후보자, 언론사는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방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2년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운영방침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2000년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회의 운영방침을 토대로 이를 보완하여 운영하자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문 게재명령은 법문상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행사를 자제하되 사안이 심각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한편, 사과문에 대한 보완책으로 심의위원회결정을 게재토록 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사에 대한 취소광고 등의 대체방안도 필요시 행사하기로 하였다.

둘째, 정정보도 게재명령과 관련해서는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간단치 않고 조사를 위해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중을 기해서 행사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성격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실관계가 분명해 정정보도 게재명령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반론보도는 운영상 큰 문제가 없으며 위원회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결정 내용으로 보았다. 다만,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경유하게 되어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정정보도 내지 사과문 게재를 원하고 있어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않고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 게재결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비록 시정요구 사안이라도 정정보도 내지는 사과문 게재결정이 곤란한 경우 반론보도를 적극 활용기로 하였다.

넷째, 자체심의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주의·경고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의는 특정인에 유리·불리하거나 여론조사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도한 경우에, 경고는 집중적으로 한 후보를 부각시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여론조사 공표금지에 위반하는 경우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주의·경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결정내용을 언론 관련 매체에 공표하도록 보도자료를 보내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의·경고결정을 위원회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선거법에 직접적 근거규정은 없으나 간접적 근거규정인 선거법 제8조의3 제5항(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2항에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운영상 언론사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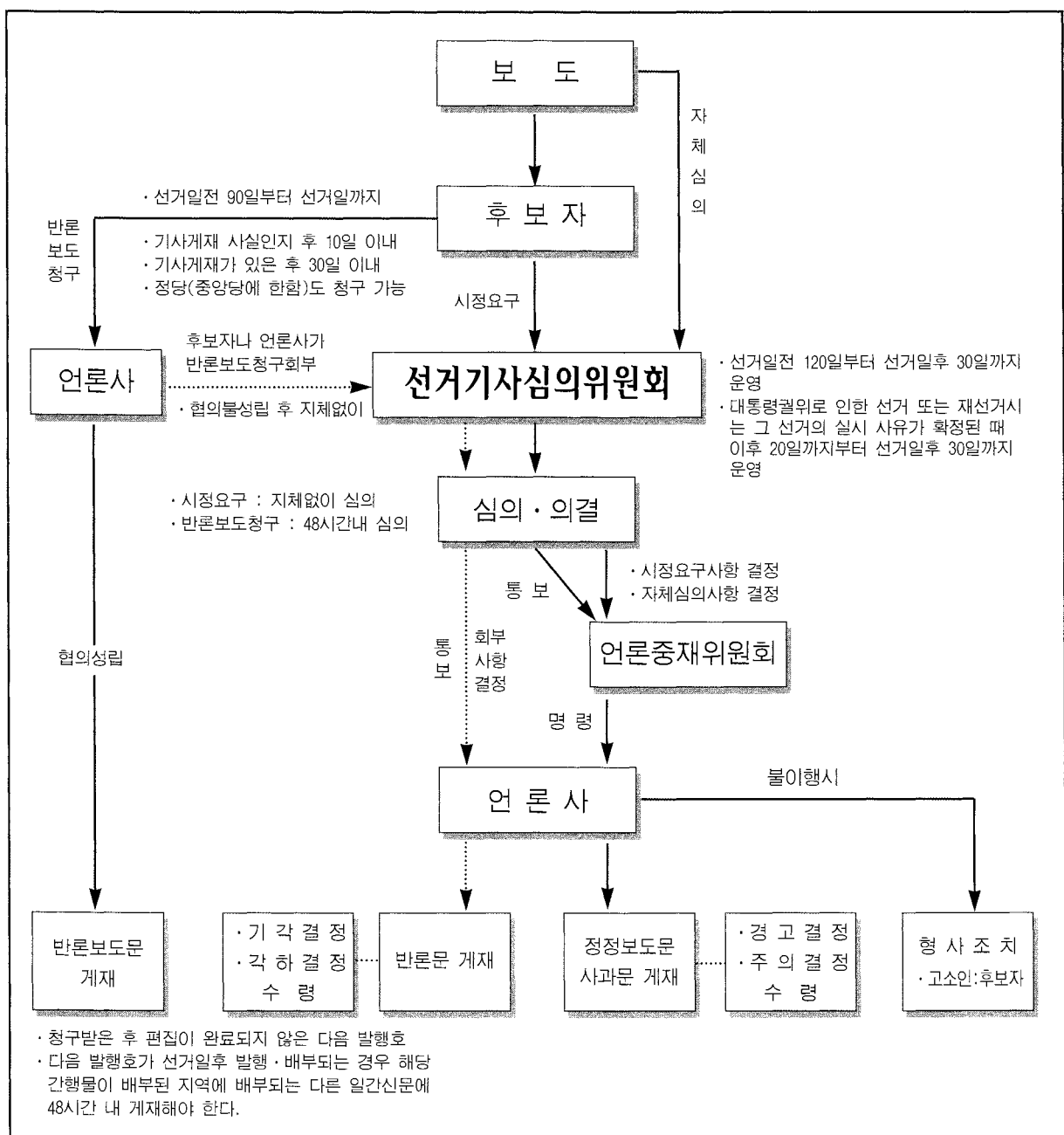
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결정이므로 심의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2. 심의 · 의결절차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후보자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 등 세 갈래의 심의를 각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절차

<표 1>



가. 자체심의

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불공정보도의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결정을 한다.

자체심의는 심의위원회 안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실무팀이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주간신문 및 주간지, 월간지, 통신 등의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 사례를 매일 찾아내 이를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자체 심의안건의 개별 심의를 통해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결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이를 통보하였다.

나. 시정요구

시정요구의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때 문제기사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 등의 결정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건에 대한 결정을 자체심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언론사에 통보하였다.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사게재가 있는 후 30일 이내에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해 정당, 후보자,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한다.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당 언론사에 통보해 반론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기각 및 각하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각 그 결정문을 통보한다.

선거법은 또 언론사의 반론보도문 게재시한은 후보자의 게재청구를 받은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호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며, 다음 호가 선거일후 발행·배부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한편, 반론보도청구는 접수된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처벌규정

언론사가 사과문·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게재결정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기사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제정 정신에 입각하여 2002년 2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50일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라 이를 위반한 기사를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46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10건 등 56건을 처리하였다. 자체심의는 주의 34건, 경고 12건을 결정하였고, 시정요구는 정정보도 게재 1건, 반론보도 게재 1건, 주의 2건, 기각 2건의 결정과 취하 4건이 있었다. <표 2>

실제로 피해구제는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후보자의 시정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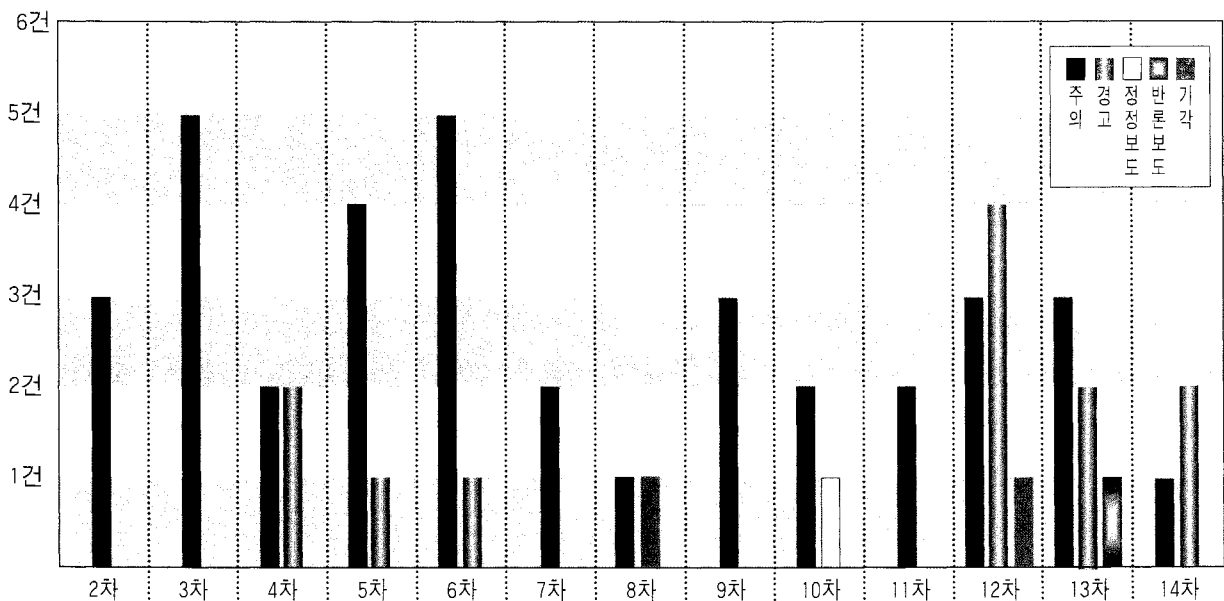
가. 자체심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 구독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주의 34건, 경고 12건을 결정하였다. 주의 또는 경고 조치된 46건의 자체심의 결정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3건(7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 11건(23.9%),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2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매체별로 보면 일간 신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에서 발행되는 주간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차수별 결정 추이

<표 2>



문 7건, 월간지 2건, 시사주간신문 1건 순이었다. 일간신문의 경우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27건(75.0%)으로 중앙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9건(25.0%)을 압도했다.

나. 시정요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10건의 시정요구를 접수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는 정정보도 게재결정 1건, 반론보도 게재결정 1건, 주의 2건, 기각 2건, 취하 4건이었다. 취하된 4건은 모두 정정보도, 해명보도 및 반론보도가 게재되어 취하된 사건들이다. 피시정요구인을 분류하면 일간신문 5개 매체(중앙지 1개, 지방지 4개), 지역주간신문 5개 매체로 나타났다.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반론보도청구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려면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후보자가 일반적으로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보다는 정정보도나 사과문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4. 자체심의 대상매체

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6,700여 종의 정기간행물 중에 구독 가능한 서울지역 발행 일간신문, 지방에서 발간하는 지방일간신문, 서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 지방에서 발간하는 주간지·주간신문 등 413종의 인쇄매체와 통신 등 총 41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도기사를 자체심의했다. <표 3·4·5>

자체심의 대상매체 중 일간신문 및 통신 현황

1. 일간신문 현황 : 총 86종(중앙지 27종, 지방지 59종)

<표 3>

시도별	매 체 명			
서울(27)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외대한뉴스, 내일신문, 노동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시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굿데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일간스포츠, 내외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제일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

시도별	매 체 명
부 산(2)	부산일보, 국제신문
대 구(4)	대구일보, 대구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인 천(3)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도일보
광 주(7)	광주일보, 광주타임스,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대 전(5)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남일보, 충청매일
울 산(3)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광역일보
경 기(11)	경기매일,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인매일,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아세아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현대일보
강 원(2)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충 북(4)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한빛일보
충 남(0)	
전 북(6)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북제일신문, 전북매일, 새전북신문
전 남(2)	전광일보, 목포일보
경 북(2)	경북일보, 경북매일
경 남(5)	가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신경남매일
제 주(3)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2. 통신현황 : 총 1종 (연합뉴스)

자체심의 대상매체 중 지방 주간지 현황

지방 주간지 현황 : 총 299종

〈표 4〉

시도별	매 체 명
서 울(92)	주간 강남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주간 강동신문, 주간 은평신문, 서울송파강동뉴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동부신문, 토요저널, 주간 서울송파신문, 주간 강남내일신문, 관악신문, 구로타임즈신문, 영등포신문, 주간 동북신문, 두레신문, 강남포스트, 서울시정뉴스, 주간 서부신문, 동작포커스, 주간 서초신문, 주간 용산신문, 노원신문, 주간 강서양천신문, 주간 서대문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양천신문, 주간 서울북부신문, 서울중구신문, 서초저널, 서울강북신문, 주간 서울중앙신문, 서초구민의신문, 서서울신문, 강동송파신문, 광진신문, 신용산신문, 아이디강동송파, 중랑구민신문, 강서신문, 송파자치신문

시도별	매 체 명			
서 울(92)	내일신문 52개 (강남서초, 강서양천, 노원도봉, 구로금천, 강동송파, 수원, 안양, 군포, 광명, 안산, 시흥,	성남, 분당, 용인, 이천, 춘천, 원주, 강릉, 일산, 인천, 연수, 김포, 의정부, 부천, 고양파주, 대전, 둔산유성, 청주,	천안아산, 전주, 익산, 김제, 군산, 광주, 목포서남, 순천동부, 여수, 영광함평, 해남진도, 광양, 무안	해운대, 북부산, 마산창원, 거제, 김해, 대구, 안동, 구미, 울산, 울산동구, 포항)
부 산(3)	금정신문, 서부산신문, 영도신문			
대 구(4)	팔공신문, 달성신문, 서대구신문, 대구 푸른신문			
인 천(4)	주간 연수신문, 향도 경인신문, 인천지역신문, 남동신문			
광 주(2)	시민의소리, 이 시민의소리			
대 전(0)				
울 산(2)	울산종합신문, 울산여성신문			
경 기(42)	주간 고양신문, 주간 풍양신문, 주간 김포신문, 파주저널, 주간 부국신문, 용인신문, 주간 세종신문, 주간 이천저널신문, 주간 의정부신문, 주간 경기동부신문, 김포뉴스,	주간 안양신문, 안산포커스, 참언론안산21, 미래신문, 용인시민신문 주간 광명신문, 문화신문, 화성오산신문, 이천연합신문, 주간포커스, 하남신문	새시흥신문 북부연합신문, 주간 포천신문, 경기북부시사신문, 주간 부천신문, 주간 민안신문, 가평타임즈, 주간 고양파주자치신문, 연천저널, 안양광역신문,	주간 고양파주시민 연합신문, 과천시민신문, 수원화성시민신문, 광주신문, 주간 수원신문 시흥21, 주간 하광신문, 주간 리빙타임즈 자치안성평택시민신문,
강 원(10)	주간 강릉신문, 강원북부신문, 영월신문,	주간 태백신문, 원주투데이, 삼척동해신문	시민의 신문, 강원리뷰,	홍천신문 주간 설악신문,
충 북(14)	주간 제천신문, 주간 보은신문, 주간 옥천신문, 주간 괴산신문,	영동신문, 충주신문, 주간 예성신문, 충청리뷰	주간 진천신문, 음성신문, 영동생활뉴스신문,	진천군민신문, 충북신문, 삼군신문,
충 남(22)	천안신문, 공주신문, 논산신문, 예산신문, 금산신문, 청양신문,	무한정보신문, 연기신문, 온양신문, 아산신문, 서령신문, 열린 대천뉴스	금산민보, 대산신문, 뉴스서천, 온주신문, 온양·아산신문,	만빛신문, 조양신문, 서해안신문, 칠갑신문, 뉴스 청양,
전 북(20)	김제시민의 신문, 주간 김제신문, 새익산신문, 전북일요시사, 순창신문,	새연합신문, 새부안신문, 서남시사신문, 주간 고창신문, 주간 정읍신문,	전주라이프저널, 주간 남원신문, 주간 서림신문, 주간 남원시민신문, 주간 남원민보,	고창코리아, 부안저널, 전라신문, 진안신문, 서남신문

시도별	매 체 명			
전 남(30)	주간 장흥신문, 격주간 만연신문, 주간 강진군민신문, 주간 강진신문, 주간 목포신문, 목포21, 목포투데이, 곡성신문,	광양신문, 진도신문, 주간 진도군민신문, 완도신문, 장성신문, 주간 해남신문, 화순군민신문, 여수신문	주간 나주신문, 예향진도신문, 격주간 담양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고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전남타임스,	청해진신문, 순천시민의신문, 순천전남동부신문, 21세기영암신문, 여수투데이, 나주투데이, 여수저널,
경 북(27)	주간 경산자치신문, 주간 경산향토신문, 주간 김천신문, 주간 고령성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주간 영천신문, 주간 예천신문,	주간 경북북부신문, 주간 경주신문, 주간 청도신문, 새재신문, 우리군민신문, 문경신문, 영주·봉화·예천생활뉴스	아시아위클리뉴스, 예천군민신문, 상주시민신문, 격주간 상주신문, 주간 구미신문, 주간 울진신문, 주간 경북중부신문	격주간 군위신문, 영덕신문, 울진자치신문, 주간 고향신문, 경북내일신문, 영주시민신문,
경 남(25)	주간 아림신문, 밀양신문, 밀양시민신문, 주간 진주신문, 주간 남해신문, 주간 한산신문, 주간 함양신문	와룡신문, 경남시사신문, 하동신문, 주간 합천신문, 서경신문, 거제시대,	새거제, 통영시민신문, 남해뉴스, 황강신문, 사천신문, 함안아라신문사,	함안신문, 새의령신문, 창녕신문, 거창신문, 주간 고성신문, 거제신문,
제 주(2)	주간 서귀포신문, 제주타임즈			

자체심의 대상매체 중 시사 주간지 및 월간지 현황

시사주간지 현황 : 총 23종, 월간지 현황 : 총 5종

〈표 5〉

분야별	매 체 명			
시사주간지(23)	뉴스메이커, 뉴스워크, 매경 ECONOMY, 시사저널, 이코노미스트,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민주신문,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새천년신문, 주간 시정신문	시민운동연합신문, 시민의신문, 시사뉴스, 시사포커스, 한국정치신문,
시사월간지(5)	말,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한국논단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48종(일간신문 27종, 통신 1종, 지방주간신문 92종, 시사주간지 23종, 시사 월간지 5종), 경기 53종(일간신문 11종, 지방주간신문 42종), 전남 32종(일간신문 2종, 지방주간신문 30종), 경남 30종(일간신문 5종, 지방주간신문 25종), 경북 29종(일간신문 2종, 지방주간신문 27종), 전북 26종(일간신문 6종, 지방주간신문 20종), 충남 22종(지방주간신문 22종), 충북 18종(일간신문 4종, 지방 주간신문 14종), 강원 12종(일간신문 2종, 지방주간신문 10종), 광주 9종(일간신문 7종, 지방주간신문 2

종), 대구 8종(일간신문 4종, 지방주간신문 4종), 인천 7종(일간신문 3종, 지방주간신문 4종), 부산 5종(일간신문 2종, 지방주간신문 3종), 대전 5종(일간신문 5종), 울산 5종(일간신문 3종, 지방주간신문 2종), 제주 5종(일간신문 3종, 지방주간신문 2종)이었다.

전체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86종(중앙지 27종, 지방지 59종), 통신 1종, 지방주간신문 299종, 시사주간지 23종, 월간지 5종이었다.

이외의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시정요구나 반론보도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법규개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가. 경과사항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중 선거법은 2002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의결을 거쳐 개정되고 3월 7일 공포되었다.

나. 개정내용

(1) 반론보도청구회부 주체에 정당 포함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주체로서 피해를 받은 후보자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을 추가하였다. 이는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주체로서 선거운동에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서 정당도 그 주체가 되게 한 것이다.

(2)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화

언론사들의 정기간행물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고의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 2회의 서면에 의한 제출요구를 받고 제출하지 아니한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가. 경과사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여 4월 24일부로 시행하였다.

나. 개정내용

(1) 반론보도청구 주체, 정당 포함

반론보도청구 회부의 주체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나 언론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선거법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도 그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위원회 규칙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2)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화

정기간행물 제출과 관련하여 일반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는 그 정기간행물의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는 구독료를 보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출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그 요구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였다.

(3)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절차 보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후에 마땅한 재심절차가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횟수는 1회에 한하게 하였다.

(4)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언론사가 이행하는지 여부를 언론중재위원회가 확인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